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수륜면 백운리에 조성된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 및 관람시간(안제4조, 제5조)

○ 휴관일

-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 기타 군수가 필요한 경우

나. 입장 및 행위의 제한(안제6조, 제7조)

다.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식물유전자원수집(안제9조)

라. 편의시설 등(안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합의사항 :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전시를 위한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 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식물원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82-1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 · 보존· 육종· 연구
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
6.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
7. 자연휴양림조성
8.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휴관) ①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 ·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시간)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7. 기타 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식물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식재된 식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식물 유전자원 및 전시품의 수집) ①군수는 식물유전자원과 식물에 관한 관련자료, 전시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식물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음료자판기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주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